

Fi 정기적금 상품설명서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저축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

구 분	내 용											
상품명	• Fi 정기적금 (대면,비대면)											
가입대상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가입금액	• 1만원 이상 (정액적립식)											
가입기간	• 6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월단위)											
가입채널	•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SB톡톡+,다올디지털뱅크Fi))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시지급식											
예금자 보호여부 [해당]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제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질권 설정 : 가능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 이내로 가능)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이자율 (24.12.05 현재)	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이율 적용 <table border="1"> <tr> <td>(연,세전)</td><td>6개월이상</td><td>12개월이상</td><td>24개월이상</td></tr> <tr> <td>기본이율</td><td>3.30%</td><td>3.80%</td><td>4.00%</td></tr> </table>			(연,세전)	6개월이상	12개월이상	24개월이상	기본이율	3.30%	3.80%	4.00%
(연,세전)	6개월이상	12개월이상	24개월이상									
기본이율	3.30%	3.80%	4.00%									
만기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 <table border="1"> <tr> <td>경과기간</td><td>이 율</td></tr> <tr> <td>1개월 이내</td><td>당초 약정금리 또는 만기시점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고시금리 중 낮은 이율</td></tr> <tr> <td>1개월 초과</td><td>연0.1%</td></tr> </table>			경과기간	이 율	1개월 이내	당초 약정금리 또는 만기시점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고시금리 중 낮은 이율	1개월 초과	연0.1%			
경과기간	이 율											
1개월 이내	당초 약정금리 또는 만기시점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고시금리 중 낮은 이율											
1개월 초과	연0.1%											
만기이자 계산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계산식 = 월납입금 × {계약월수 × (계약월수+1)/2 × 이율/12} 											
만기 앞당김 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기 앞당김 이율 : 약정이율+1.5% • 모든 화차의 납입금을 입금한 경우, 만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 시 만기앞당김 이자를 만기 지급이자에서 공제 후 지급 											
원천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15.4%*)을 공제하여 지급 (이자소득의 14% + 이자소득세의 10%(1.4%)를 징수) 											

구 분	내 용													
중도해지 이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금액마다 입금일부터 해지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예치기간</th> <th>이 율</th> </tr> </thead> <tbody> <tr> <td>1개월미만</td> <td>신규일의 보통예금 금리</td> </tr> <tr> <td>1개월이상 ~ 6개월미만</td> <td>기본이율 × 50%</td> </tr> <tr> <td>6개월이상 ~ 9개월미만</td> <td>기본이율 × 55%</td> </tr> <tr> <td>9개월이상 ~ 12개월미만</td> <td>기본이율 × 60%</td> </tr> <tr> <td>12개월이상</td> <td>기본이율 × 70%</td> </tr> </tbody> </table>		예치기간	이 율	1개월미만	신규일의 보통예금 금리	1개월이상 ~ 6개월미만	기본이율 × 50%	6개월이상 ~ 9개월미만	기본이율 × 55%	9개월이상 ~ 12개월미만	기본이율 × 60%	12개월이상	기본이율 × 70%
예치기간	이 율													
1개월미만	신규일의 보통예금 금리													
1개월이상 ~ 6개월미만	기본이율 × 50%													
6개월이상 ~ 9개월미만	기본이율 × 55%													
9개월이상 ~ 12개월미만	기본이율 × 60%													
12개월이상	기본이율 ×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금지연이율 : 약정이율+1.5% 입금금액을 매월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경우 ①만기지급금에서 입금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 ②만기일이 월평균지연일수만큼 늦춰질 수 있습니다. 														
<p>① 입금지연이자 =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365 X 입금지연이율 x 월입금금액</p> <p>② 월평균지연일수 =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계약월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예금 해지 시 불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 적용 													
세제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p>※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 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p>													
	<p>※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p>													
	<p>※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p>													
만기해지 사전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기 도래에 따라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타행포함)로 이체 납입 연체일수가 있는 정기적금의 자동해지는 만기이연일에 처리 전회차 불입이 완료된 계좌에 한하여 처리 자동재연장 (원금연장 또는 원리금연장) 신청은 불가합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있음													

[민원 및 분쟁 관련사항]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44-67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daolsb.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❶ 본 예금 상품을 계약하고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며, 약정이율로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예 아니오 "중도해지이율" 항목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❷ 본인은 다음과 저축은행과 예금거래를 함에 있어 **상품설명서를 제공받았으며,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예금거래의 주요내용, 거래조건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예금주:

(서명/인)

대리인: (서명/인)